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0년 11월 2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3일

3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통합기금의 계정구분(안 제2조)
-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3조)
-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4조)
- 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개정

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)으로 변경하고, 통합계정은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, 융자하며,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및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임.

〈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〉

-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07년 1월 1일자로 설치된 기금임.
- 기금조성액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2018년말 조성액	2019년말 조성액	2002년말 조성액
78,356	77,496	73,349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명을 기존 “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개정함.
 - 기존 ‘통합관리기금’에서 ‘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으로 기금 명칭이 변경된 사유를 살펴보면, 이전 「지방재정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한 ‘재정안정화기금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‘통합관리기금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었음. 이와 같이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유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유통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었음.
 - 이에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유통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

다른 자금유통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‘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 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함) 설치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시행 '20. 6. 9.)에 따른 것임.

-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, 법제처 “법령 입안·심사 기준”에 따르면, 목적 규정에는 약어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, 본 조항에 사용된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는 것이 타당함.

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~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 ~	제1조(목적) ~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~

- 안 제2조는 통합기금의 계정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토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것임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- 또한, 안 제1조에서 수정한 약어표기를 안 제2조에 포함해야 할 것임.

개정안	수정안
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<u>통합기금</u> 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	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<u>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</u> 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- 안 제3조 및 제4조는 충청북도에서 통합기금 운용을 위한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,

-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, 융자금의상환액 및 이자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,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,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용도로 사용함.
-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%를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20% 이상 적립하여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%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용도는 세입감소와 재난·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대비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임.
- 지방안정화 계정의 재원 적립 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제7항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, 충북의 경우 타 시도 기준의 평균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보임.

※(참고) 전국 시·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현황 참조

- 다만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,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적립 금액의 축소가 예상되는 바, 이에 대한 검토 및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<충청북도 최근 5년간 세입 및 잉여금 현황(결산)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15년도	'16년도	'17년도	'18년도	'19년도
지방세 세입액	9,679	10,053	10,664	11,346	12,904
순세계잉여금	2,253	2,227	2,048	2,712	2,100

- 안 제6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~

- 안 제8조는 예탁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규정으로,
- 기존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와 동일하게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, 예탁이자는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‘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의 설치·기능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- 위원회에 관련해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시행일 2020. 8. 7.)제5조에 “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 - 본 조례안의 제11조의2(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, 제17조(수당 등의 지급)은 각각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 및 제15조와 내용상 중복으로 볼 수 있는 바, 조례의 간결성 측면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개정안	수정안
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.	<삭 제> 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, 제10조와 중복
제17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 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와 중복

- 안 제13조(임기) 조항과 관련해서 살펴보면, 현행 조례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, 개정 조례안에서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음. 그러나 다수에게 위원활동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, 장기 연임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3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 하되 연임</u> 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	제1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</u> 한다.	제1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</u> 할 수 있다..

- 안 제16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것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,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안 제18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한 것임.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는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본 기금은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은 타당함.

- 다만, 개정안의 제17조(수당 등의 지급)를 삭제할 경우, 개정안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는 제18조로 수정해야 함.

○ 안 부칙에는 시행일, 경과조치,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부칙 제3조제10항의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(이하 “청소년육성기금조례”라 함) 일부개정 내용과 관련해, 현행 청소년육성기금조례 제3조제3항에는 “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”로 정하고 있는 바, 본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조례 제3조제3항의 위원회 명칭도 부칙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를 통해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.

개정안	수정안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⑩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〈신 설〉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	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⑩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 중 “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

정화기금(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)으로 변경하고, 통합계정은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, 융자하며,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,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음.

○ 다만, 주요내용 검토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함.

참고

전국 시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현황

시도	조례명	재정안정화계정 재원적립 기준		비 고
		지방세	순세계잉여금	
부산	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	-	3년평균 200%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대구	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전년대비 20% 초과 증가시 초과분의 10%이상	순세계잉여금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	
대전	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	전년대비 30%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%이상	3년평균 2배 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울산	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전년대비 30%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%이상	3년평균 120% 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경기	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3년평균 증가율 30%초과시 초과분의 10%이상	순세계잉여금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	
충남	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3년평균 증가율 30%초과시 초과분의 10%이상	3년평균 200%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전북	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3년평균 증가율 30%초과시 초과분의 10%이상	3년평균 200%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경남	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전년대비 20%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30%이상	3년평균 120%초과시 초과분의 30%이상	

※ 조례 미개정 시도(서울, 인천, 광주, 세종, 강원, 전남, 경북, 제주)